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1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정춘숙·박용진·송옥주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김철민 • 서삼석 • 기동민

박찬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404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

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법률 제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 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대 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8조 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을 부과-----제7조까지,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3조부 터 제26조까지 및 「축산물 위 생관리법 _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 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 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 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